

의안번호	2215867
의 퇴 인	유영하의원
회 답 일	2026.3.30.
추계번호	26D005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사면 등이 확정된 전직대통령 등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8억 5,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99억 1,600만원 (연평균 39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연금	684	698	712	727	741	3,562	712
예우보조금 등	1,167	1,190	1,214	1,238	1,263	6,072	1,214
비서관 인건비 등	2,007	1,994	2,043	2,673	2,907	10,282	2,056
합 계	3,858	3,882	3,969	4,638	4,911	19,916	3,983

주 1. 본 추계 결과는 현 시점에서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사면 등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예우 회복대상자 규모, 연금액, 예우보조금 단가 및 채용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2.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였으나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 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및 예우를 위한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전직대통령 연금 및 예우 등 지원 현황(2026년도 예산)

1. 연금: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2131-302)
 - 전직대통령(1명) 193백만원/ 유족(1명) 143백만원
2. 예우보조금 등: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사업(2131-307)
 - 임차료: 전직대통령 45백만원/ 유족 45백만원
 - 예우보조금: 전직대통령 234백만원/ 유족 133백만원
 - 비서실활동비: 전직대통령 76.8백만원/ 유족 38.4백만원
 - ※ 민간의료기관 경비와 국외여비는 전직대통령 및 예우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필요시에만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현행법 제6조에 따른 비서관 및 운전기사
 - 전직대통령: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 별정직), 운전기사 1명(별정직)
 - 유족(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 비서관 1명(고위공무원), 운전기사 1명(별정직)

주. 202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및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

- 본 추계에서는 사면 및 복권된 전직대통령 2명¹⁾ 및 전직대통령의 유족(배우자) 2명²⁾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될 경우의 연금, 예우보조금 등(예우보조금, 차량지원 임차료, 비서실활동비), 비서관 및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나 사면된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³⁾
 - 전직대통령의 연금 및 예우보조금 등의 단가는 행정안전부의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2131-302),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2131-307) 세부사업 2026년도 예산을 참고함
 - 개정안에 따라 신규채용하게 되는 비서관 8명(전직대통령 2명에게 비서관 각 3명, 유족 2명에게 비서관 각 1명 지원), 운전기사 4명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와 그에 수반되는 운영경비(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은 기존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된 전직대통령 1명⁴⁾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⁵⁾을 적용

1) 박근혜(2021.12.31. 사면·복권), 이명박(2022.12.28. 사면·복권)

2) 영부인 2인(1997.12.22. 사면·복권된 전두환, 노태우)

3) 개정안 제2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윤석열(헌법재판소 2025.4.4. 탄핵 결정 선고)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전직대통령 2인 및 유족 2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추가재정소요는 35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 행정안전부의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2131-302) 세부사업에 따른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2026년도 연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함

- 전직대통령 연금 193백만원(2026년도)
- 전직대통령 유족 연금 143백만원(2026년도)

[표 3]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전직대통령 수(A, 명)	2	2	2	2	2	-
연금액(B, 백만원)	197	201	205	209	213	-
소계(C=A×B, 백만원)	393	401	409	418	426	2,047
유족 수(D, 명)	2	2	2	2	2	-
연금액(E, 백만원)	146	149	152	155	158	-
소계(F=D×E, 백만원)	291	297	303	309	315	1,515
합 계 (G=C+F, 백만원)	684	698	712	727	741	3,56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예우보조금 등(예우보조금, 차량지원 임차료, 비서실활동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전직대통령 2인 및 유족 2인에게 예우보조금, 차량지원 임차료, 비서실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추가재정소요는 60억 7,200만원으로 추계됨

○ 행정안전부의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사업에서 전직대통령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예우보조금, 차량지원 임차료, 비서실 활동비는 다음과 같음 (2026년도 기준)

- 예우보조금: 전직대통령 234백만원, 유족 133백만원
- 차량지원 임차료: 전직대통령 45백만원, 유족 45백만원
- 비서실 활동비: 전직대통령 76.8백만원, 유족 38.4백만원

→ 전직대통령의 경우 연간 355.8백만원, 유족의 경우 216.4백만원

○ 예우보조금, 차량지원 임차료, 비서실활동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민간의료기관 경비와 국외여비는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필요시에만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표 4]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예우보조금 등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전직대통령 수(A, 명)	2	2	2	2	2	-
예우보조금 등(B, 백만원)	363	370	378	385	393	-
소계(C=A×B, 백만원)	726	740	755	770	786	3,777
유족 수(D, 명)	2	2	2	2	2	-
예우보조금 등(E, 백만원)	221	225	229	234	239	-
소계(F=D×E, 백만원)	441	450	459	468	477	2,295
합 계 (G=C+F, 백만원)	1,167	1,190	1,214	1,238	1,263	6,07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비서관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비서관 8명, 운전기사 4명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산출함
- (보수) 비서관 8명(고위공무원단), 운전기사 4명(별정직 6급)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함
 -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이 둘 수 있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음
 - ① 전직대통령
 - 비서관(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 운전기사(1명): 별정직
 - ② 유족
 - 비서관(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 운전기사(1명): 별정직
 - 고위공무원단 및 별정직(6급 전제)의 보수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연봉액을 준용하여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산출

[표 5] 직급별 1인당 보수(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고위공무원단	149,088	9,960	7,800	1,680	480	159,048
별정직 6급	56,569	4,380	2,220	1,680	480	60,949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직급보조비는 고위공무원단 월 65만원, 별정직 6급 월 18.5만원임
 3.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임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 추계) 비서관 8명, 운전기사 4명 채용에 따라 연도별 1인당 보수에 인원 수를 곱하여 보수 총액을 산출하면, 추계기간 동안 81억 4,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직급별 1인당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비서관 (고위공무원단)	8명	1,303	1,334	1,366	1,399	1,433	6,835
운전기사 (별정직 6급)	4명	250	256	262	268	274	1,310
합계		1,553	1,590	1,628	1,667	1,707	8,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연동되므로,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하였을 때,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10억 8,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관부담금	204	210	216	223	230	1,0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행정안전부의 2026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2.2%⁶⁾를 앞서 추계된 보수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9억 9,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경비	189	194	199	203	208	9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2026년 예산에서 행정안전부(본부 기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 (자산취득비) 비서관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100만원으로 예상됨

- 자산취득비는 인력이 증원되는 첫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27년의 자산취득비를 추계

[표 9]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61	-	-	-	-	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되었거나 사면·복권된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2억 8,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비서관 및 운전기사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1,553	1,590	1,628	1,667	1,707	8,145
기관부담금	204	210	216	223	230	1,083
기본경비	189	194	199	203	208	993
자산취득비	61	-	-	-	-	61
합계	2,007	1,994	2,043	2,673	2,907	10,282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사면 및 복권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8억 5,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9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금	684	698	712	727	741	3,562
예우보조금 등	1,167	1,190	1,214	1,238	1,263	6,072
비서관 인건비 등	2,007	1,994	2,043	2,673	2,907	10,282
합 계	3,858	3,882	3,969	4,638	4,911	19,91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사면 및 복권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연금액, 예우보조금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